

'22년 외국인근로자(E-9, H-2) 취업활동기간 연장안내

1 추진배경

-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 정상화 추진중이나
 -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입출국 제한 조치가 다시 강화되는 등 도입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임을 고려

→ '22년 중 취업활동기간 만료 예정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필요

- *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제2항: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 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,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**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('21.12.28)

2 취업활동기간 연장(1년) 대상

1. 취업활동기간 연장 대상

- 고용허가제에 의해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(E-9, H-2)로서 취업활동기간이 '22.1.1부터 4.12. 기간에 만료되는 자
 - 단, 체류기간연장 결격사유가 있는 자(결격사유 해소 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가능) 등 제외

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

일반 외국인력(E-9)	방문취업 동포(H-2)
고용노동부에서 1년 직권 연장	체류기간 만료 전 특례고용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동포에 한하여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

- (고용허가기간 연장) 사용자는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, 고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
 - (E-9) 사업장에서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기존 취업활동기간 만료 7일전까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
 - (H-2) 특례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연장 신고

- (사업장 변경)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받았으나 기존 사업장에 근로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변경 신청 가능

- (전용보험) 취업활동기간 연장 후 고용허가기간연장을 받은 사업주는 임금채불보증보험 연장계약, 외국인근로자는 연장기간 만큼 상해보험 가입하도록 안내
 - * 출국만기보험은 연장기간 만큼 자동 연장됨

3 행정사항

- (시행시기) 2022.1.1.부터 적용

◆ 자세한 사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(☎710-4408~4410)로 문의